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정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9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5.

발 의 자:문정복·강준현·김교흥

김남국 · 김승원 · 문진석

박상혁 · 소병훈 · 윤영덕

장경태 · 천준호 · 최강욱

허 영·홍기원·황운하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, 다양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조성에 나서고 있음.

이에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, 통학환경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.

한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위치한 이른바 '초품아'(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)가 각광 받으며 인근지역의 집값 상 승을 이끌고 있음.

이는 주택의 입지와 가격에 따라 교육환경과 여건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으며,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과열과 전세가 상승을수반한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였음.

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·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 고,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본 개정안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이 정하는 학교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여 중·소규모 택지 내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8조의2제1항)
- 나.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시설 신설의 경우 「지방재정법」상의 투자 심사 절차 대신 지자체의 자체심사만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심사 절 차의 간소화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분야의 지방분권화에 기 여하고자 함(안 제38조의2제3항).
- 다. 자체심사에 따라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또는 지원하도록 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(안 제38조의2제4항).
- 라. 학교부지가 확보된 경우 본 개정안 시행 전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,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(안부칙).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학교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특례) ① 주택지구에 공공 주택사업자가 조성한 학교용지에 지방자치단체가 「초·중등교육 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 초등학교·중학교를 설치하는 경 우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배치 및 통학 거리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.

- 1. 초등학교는 1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, 중학교는 2 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
- 2.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통학거리는 각각 1천미터 이내로 할 것
- 3. 학교용지의 면적은 주택지구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
- ② 제1항에 따라 공립 초등학교·중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「초·중 등교육법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설립 기준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해

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로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를 갈음한다.

④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학교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)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학 교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재 정 안 제38조의2(학교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특례) ① 주택지구 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한 학교용지에 지방자치단체가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 초등학교・ 중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「학 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」 제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배치 및 통학거리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. 1. 초등학교는 1개의 근린주거 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, 중학 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 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2.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통학 거리는 각각 1천미터 이내로 할 것 3. 학교용지의 면적은 주택지구
	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

- ② 제1항에 따라 공립 초등학교·중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설립 기 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하는 학교시설에 대해 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 체심사로 「지방재정법」 제37 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갈음한 다.
- ④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.